

신둔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신둔초등학교 학교생활 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이 규정에서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차별받지 않을 권리】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성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성적지향, 다문화가정 등의 소수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5조【적용근거】본 규정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 보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학생인권

제 1 절 교내생활

제6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자기주도학습】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쓴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3.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0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교우 및 상·하급 간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1조【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신체 및 정신적 폭력)을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폭력피해가 발생할 때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과정을 거쳐 필요시 피해학생은 보호, 가해학생은 선도를 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과의 분쟁을 조정한다.

제12조【양성평등】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절을 지킨다.

1. 남녀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2.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3.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이나 교감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 학부모,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워주며 학생들은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동아리활동】방과후 교육활동과 동아리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진로인성교육부나 혁신교육연구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전문가나 교사 및 학부모)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3.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학생은 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4조【여가활동】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관리 교사와 사용 확인이 진행 된 이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5조【용의사항】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안전을 위하여 과도한 액세서리 착용을 자제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5. 두발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두발의 형태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
6.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7. 소지품 검사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 검사는 금지한다. 단 교육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담임교사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학생이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 실시 목적을 거듭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도의 교육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학급 내 봉사활동】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학생의 근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7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에게 알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8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가.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나. 공적외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라. 현장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연간 20일 이내로 한다.(신청서는 일주일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보고서는 다녀온 후 제출한다)교류(교환)체험학습은 연간 1개월 이내로 한다.
 - 마.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4. 학교에서 정한 등교시간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5. 학교에서 정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6. 교과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7.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9.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10.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9조【경조사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1
	○ 본인	20
입양	○ 학생 본인	5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사망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제20조【출석사항의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결석이 없는 경우 개근으로 평가한다.
2. 출석사항의 평가 결과는 생활통지표 및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별도로 시상하지 않는다.

제21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판정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3. 기타 결석
 - ①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 ②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2조【수료】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 2 절 교외생활

제23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학교 교우를 만나면 인사를 한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제24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 3 절 정보통신

제25조【사이버 생활】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26조【통신기기 관리】올바른 통신 예절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휴대전화기는 소지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과시간 중 사용하지 않는다. (단, 일과시간 중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위 규정을 어기고 휴대폰을 소지하여 수업에 방해가 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차 조치 : 부모님께 전화로 위반 사실을 고지하여 연계 지도한다.
 - 2차 조치 : 부모님께 연락드린 후 3일간 휴대폰을 학교에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 3차 이상 : 학부모를 소환하여 상담한다.
3. 휴대폰 외에도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휴대용 게임기, 음악파일재생기기 등 모든 전자기기도 휴대폰과 같은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자기 정보 결정권】자신에 관련된 정보를 본인이 원할 경우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열람 복사 및 수정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사 표현의 자유】

1. 학생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학생전용 게시판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2. 학생전용 게시판은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학생 게시판의 내용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삭제할 것을 안내한 후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삭제한다.

제 4 절 자치회

제29조【학생자치활동】

1.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둔다.
2. 학교장은 학생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3. 학교 전체의 생활과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실천적인 의욕을 갖게 한다 .
4. 담당 교사와 학급 담임 교사는 엄정 중립과 규정에 의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30조【회원】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31조【권리 및 의무】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2조【운영사항】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제33조【관장사항】학생자치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활동
2.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4조【효력발생】학생자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정당한 효력이 발생하며 지도교사는 학생자치회의 의결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당해 의결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학생자치회에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5조【학생자치회 임원】학생자치회 임원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으로 정한다.
2. 임기는 1학기로 한다.
3. 구성은 학생자치회 회장 1명(6학년), 6학년부회장(1명), 5학년부회장 (1명)으로 선출한다.
3. 본교 5,6학년 재학중 (6개월 이상 재학 중인 학생) 예의바르고 행동이 모범적인 어린이로
- 4, 5, 6학년 중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다.
4. 학생자치회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5. 학생자치회의 임원직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차득점 순에 의하여 그 직을 다른 사람에게 차례로 승계한다. (재선거 하지 않음)
6. 선거절차는 당해년도에 계획에 따른다.

제36조【학생자치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학생자치회를 둔다.

1. 구성
 - ① 전교 회장, 부회장 및 전 학년의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기능

- ①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②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회의

- ① 학생자치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회의는 월 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자치회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④ 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7조【학급자치회 임원】

- 1. 1학년은 선거가 아님 담임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 2. 2 ~ 6학년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선출한다
- 3.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 4. 선거절차는 당해년도 계획에 따른다.

제38조【학급자치회 운영】

- 1. 학급의 회장, 부회장이 주도하여 학급자치회의를 운영한다.
- 2. 학생중심의 민주적 토의절차가 진행되도록 한다.

제 3 장 학생생활 지도

제 1 절 생활지도

제39조【안전지도】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1.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2.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녹색어머니회), 배움터지킴이로 구성된 교통 안전지도반을 운영한다.
- 6. 이 외의 사항은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40조【진로지도】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1.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2.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3.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전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4.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제41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순회지도를 할 수 있다.

제42조【학생체벌금지】학생 체벌(매, 기합, 기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은 일체 금지한다.

제43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 2 절 시상

제44조【종류】학생포상은 교내·교외로 구분한다. 교외 유관기관 및 단체의 모상은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내 포상은 신둔 어린이상 및 6학년의 경우 졸업생 시상 규정제를 제정 시행한다.

제45조【시기】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년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46조【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47조【특별상】교내·외 행사가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48조【졸업생수상】졸업생 수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4 장 학생선도 및 징계

제49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 1. 학생들의 생활지도, 시상, 징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둔다.
- 2. 교감, 생활부장(교사)을 포함하여 교원 5~1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생활부장으로 하고 간사를 1명 둔다.

제50조【기능】

- 1.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징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2. 학생들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1조【운영】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선도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담당교사는 사안 발생보고서, 학생 자필 경위서(자기변

- 문서) 등을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3. 선도 사안이 발생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4. 위원회는 심의 전에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사전에 회의개최에 대한 안내를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한다
 5.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반드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협의·결정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도 내용을 안내한다.
 7.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8.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생 및 보호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52조【학생징계의 원칙】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학생으로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생징계에 앞서 교육기본법 제 12조 1항에 의거하여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급급적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준다.
2.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을 징계할 경우, 체벌을 일체금하고 대체프로그램¹⁾에 의해 지도한다.
3. 학생징계는 사안에 따른 엄한 처벌보다는 차후 유사한 사안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4. 학생의 징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하되 사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 5. 삭제

제53조【징계의 기준】징계가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행위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4.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5. 학습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제54조【징계의 종류 및 내용】

1. 학교 내의 봉사: 1일 2시간이내, 5일 이내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결정하여 실시한다.
 - ① 교내의 환경 정화활동(쓰레기 줍기 및 복도 계단청소)
 - ②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1) 신둔초 생활교육 대체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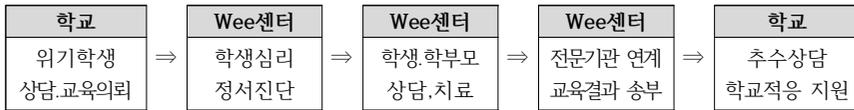
- ③ 교재·교구 정비
2. 사회봉사: 1일 5시간이내, 5일 이내
 - ① 지역 사회 봉사활동
 - ② 복지시설 일손 돕기
 - ③ 사회봉사는 학교 외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3. 특별교육 이수: 1일 5시간이내, 5일 이내로 하되 운영 사정에 따라 최대 25시간 이내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 ①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과정 이수
 - ②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 등의 교육 이수
 - ③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 ④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⑤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⑥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⑦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 ①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기회를 제공
 - ②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고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음.
 - ③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 제공

제55조【징계 절차】당해 규정을 적용하되 체벌은 일체 행사할 수 없다.

1. 설득, 상담, 이해의 단계를 거치며, 당해 학생에게 상담을 받는 이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
2. 상담이 어려운 때는 학교장의 도움을 받는다.
단, 매 사안마다 학교장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 규칙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해당 학생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4. 상담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후 실시하며, 사전에 보호자와 면담을 통하여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 한다.
5. 학교 내 봉사의 경우 수업시간을 제외한 아침,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6.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징계의 기준	징계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1.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1. 개인상담 및 훈육(상담록기록)	1. 학부모소환상담 (담임-교감-교장)	1. 교육지원청 Wee센터특별교육 이수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2. 학부모께 통지 및 훈육요청	2. 학교내봉사활동 2일	2. 전문 상담 교사 상담
3.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4.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 1-2순으로 실시	3. 사회봉사 3시간 이상	3.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출석정지
5. 학습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 1단계 지도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1-3순으로 실시	※ 2단계 지도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1-2순으로 실시

- 특별교육이수 처리절차



- 특별교육을 이수 시 해당 단계나 기관장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특별교육 이수 기간 동안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56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제57조【심의】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8조【재심의 부의 및 운영】

1.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분명히 기재하여 신청한다.
3. 재심의 신청은 징계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 재심의 신청 횟수는 1회로 규정하며,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5.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6. 재심의가 결정되면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재심의 결과는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7. 학교장은 재심의 결과에 대한 결재를 하고 학생 및 그 보호자에 결과를 통지하며 조치를 이행한다.

제59조【심의 확정】선도처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제60조【통보】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조치결정통지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학교장은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 결정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 사항을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지한다.
2. 조치결정 통지시 조치결정내용, 결정 이유, 위반 조항, 징계 조치 기간 및 징계 조치 기간에 학생이 해야 할 사항,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통지한다.
3.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유보】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선도처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선도처분 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2조【경감 및 해제】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반성의 정도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선도처분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63조【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 및 보호자는 재심을 통한 처분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제 5 장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방법

제64조【규정 개정심의 위원회 구성】 1.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학생생활, 예방,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교원.학부모 대표.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한다.
3.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하여, 학생위원 3인, 교원위원 3인, 학부모위원 2인,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한다.
4.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성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제65조【규정 개정심의 위원회 운영】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2.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3.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설문조사, 토론회 등)를 반드시 거친다.
4.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한다.

제66조【개정방법】본 규정은 학교생활 인권규정 규정개정심의 위원회 1/3 이상의 발의와 규정 개정 심의 위원회 1/2 이상이 출석한 위원회에서 규정 개정심의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규정은 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 제정
2. (1차 개정) 2010년 4월 23일
3. (2차 개정) 2010년 11월 17일
4. (3차 개정) 2011년 3월 15일
5. (4차 개정) 2011년 6월 14일
6. (5차 개정) 2012년 7월 2일
7. (6차 개정) 2014년 12월 12일
8. (7차 개정) 2018년 10월 26일
9. (8차 개정) 2019년 5월 10일
10. (9차 개정) 2019년 6월 27일
11. (10차 개정) 2019년 9월 26일
12. (11차 개정) 2020년 9월 24일
13. (12차 개정) 2021년 4월 7일
14. (13차 개정) 2022년 6월 30일

신원초등학교 생활교육 대체 프로그램

1단계 생활교육 대체프로그램

구분	행위 기준	
1단계	남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	남의 물건 및 금품을 훔치거나 갈취하는 행위
	수업 중 친구와 장난을 치거나 떠드는 행위	남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수업 중 교사의 지시와 과제를 무시하는 행위	친구와 자주 다투거나 말썽을 피우는 행위
	수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	학교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이유없이 수업에 늦거나 지각을 하는 행위	쓰레기나 물건(우유포함)을 몰래 버리는 행위
	수업 중 무단 이탈하는 행위	인터넷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일체의 행위
	수업을 위한 과제물을 하지 않는 행위	학교문화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옷차림과 두발
	시험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불법장난감, 음란물 등을 학교로 가져오는 행위
	실내에서 뛰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행위	청소 및 자신의 역할을 불성실하게 하는 행위
	집단으로 남을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학교규정에 반하는 불법조직을 결성하는 행위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헐박을 하는 행위
	거짓말을 하거나 친구를 음해하는 행위	실내에서 고성과 장난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
지도 주체	학급담임교사, 전담교사, 보결지도교사, 보충학습지도교사	
지도 내용	1. 개인상담 및 훈육 2. 학부모에게 통지	
추수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 시 교사는 학생의 입장과 생각을 소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소명 및 상담내용, 지도내용을 교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단계 생활교육 대체프로그램

구분	행위기준	
2단계	집단 괴롭힘, 사안이 심각하게 발생한 경우	
	학생의 행위로 인해 학교 및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습적 흡연 및 음주를 하는 경우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 욕을 하는 경우(교권침해)	
	1단계 조치에 대한 교사의 지시와 훈육을 무시하며 불응하는 경우	
지도 주체	해당학생 학부모, 학급담임, 교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천교육지원청)	
지도 내용	1. 학부모 소환 상담(학급담임-교감-교장순) 2. 학교내 봉사활동 2일 3. 사회봉사활동 3회 이상 ※ 봉사활동은 학급담임선생님이 지정하고 관리지도하며 학부모에게 통보할 수 있음	
추수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 시 교사는 학생의 입장과 생각을 소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학부모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시 서면을 통해 통보하고, 전화상담을 할 수 있다. 	

3단계 생활교육 대체프로그램

구분	행위기준
3단계	2단계 조치에 대한 학생의 반성 및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천교육지원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안이 심각하여 학교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지도 주체	교육 지원청 Wee센터, 관련병원,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지도 내용	1. 이천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치료 및 심리진단검사 2. 전문상담기관 및 전문병원 진단 3.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출석정지 4. 학교장 통고제도
추수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단계 조치는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학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관리자의 결정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